

2024년 남동구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사업

「All-round 남동」 참여 동아리

지원신청시 참고사항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남동구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「All-round」
- 모집기간 : 2024년 5월 7일(화) ~ 5월 21일(화) / 15일 간
- 활동기간 : 2024년 6월 ~ 11월 (지원금 교부 : 6월 2주 예정)
- 지원대상 : 남동구 활동 3인 이상의 생활문화동아리 / 총 13개 팀 지원
- 지원내용 : 생활문화동아리 활동비 지원(홍보비, 대관비, 임차비, 강사비, 진행비 등)
- 지원분야 : 생활문화 활동, 문화예술 창작 활동, 동아리 간 교류 활동, 인문 사회 등의 활동
분야(생활체육 분야와 정치·종교·상업적 성격의 문화 활동 제외)
- 지원규모 : 동아리별 최소 60만원 ~ 최대 100만원 (60만원 5개 팀, 80만원 5개 팀, 100만원 3개 팀)
- 세부내용

지원분야	지원내용
생활문화동아리 활동비 지원	생활문화동아리 모임 및 발표 활동에 필요한 비용 - 홍보비 : 리플릿, 도록, 자료집, 홍보물, 영상물 제작 등 - 대관비 : 모임 및 발표 공간 대관비, 시설사용료 등 - 임차료 : 장비 임차료, 의상 및 기기 대여비 등 - 강사비 : 동아리 교육 주강사비(보조강사비 지원 불가) - 진행비 : 활동에 필요한 기타 비용(회의진행비, 이체수수료, 운송비 등)

★ 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 사항★

- ※ 지출항목 : 홍보비, 대관비, 임차비, 강사비, 진행비(재료비, 회의비, 이체수수료 등) 항목만 예산집행 가능
- ※ 구성원 인건비(사례비), 교통비, 공과금, 자선취득성 물품구입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지출 불가
- ※ 동아리별 **5만원 이하**까지 회의 진행비(다과비, 식비) 사용 가능 / 모임활동확인서 작성 및 제출 **必**
→ 다과비 1인당 3,500원, 식비 1인당 8,000원 제한, (금액 이상으로 집행한 경우, 지원금 환수 사유에 해당)
- ※ **카드결제를 원칙**으로 하며, **강사비만 계좌이체 가능**, 예외 상황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**必**
- ※ 정산 시, 지출 항목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일괄 제출, 재료 등 물품 구입은 사진 등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→ 최종 선정 이후 워크숍 진행 시, 지원금 정산 관련 안내자료 배포 및 '정산도움 창구' 운영 관련 안내 예정
- ※ 남동/서창생활문화센터 **최소 2회 이상 대관 필수**
→ 대관료 3시간 1만원 / 지원신청시, **지원금 활용계획서상 최소 2회 (대관비 2만원) 이상 예산편성 필수**
→ 센터 위치 : 남동생활문화센터 (남동구 독점로 30번길 15) / 서창생활문화센터 (남동구 서창남로 99)
- ※ 주강사비 **1회차당 5만원~10만원 이내 책정 가능**, 지원금별 30% 범위 내
- ※ 강사비 책정 가능 금액 : 지원금 60만원(→18만원), 80만원(→24만원), 100만원(→30만원)
→ 강사비 집행 시, **원천징수 후 실지금액만 강사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함**
→ 대표자 이름으로 '**소득세·지방세 신고·납부**' 필수(홈택스, 위택스 활용, 워크숍 당일 안내자료 배포 예정)
- ※ **선정심의를 통해 신청시 제출한 예산에서 일부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.**

※ 예산과목 기준(예산편성 지침)

구분	세부항목	유의사항
홍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 목적을 위한 홍보물 제작 (포스터, 리플릿, 배너, 현수막, 웹 홍보물 등) - 활동 목적에 따른 자료 및 창작물 제작 (자료 편집, 인쇄, 제작, 출판 등) - 활동 목적에 따른 과정 및 결과 영상 제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과도한 예산집행 금지 ※ 홍보물에 지원사업명 및 남동문화재단 재단 로고 명기 필수
대관/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 목적을 위한 활동(연습, 모임) 장소, 발표 장소 등 · 연습/모임 장소 외 발표/전시 장소 대관비용은 50% 이상 편성이 불가함 · 동아리 대표자 또는 소속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는 비용 지급이 불가함 - 활동 목적에 따른 의상 대여, 전자기기, 보면대 약기 등 대여 비용 - 활동 목적에 따른 차량 및 장비 운송, 시설장비(음향, 조명, 무대, 연구물품 등) 등 임차비 · 운송, 시설장비 등 임차비는 50% 이상 편성이 불가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남동구 소재 생활문화센터 최소 2회 대관 필수 ※위치: 남동생활문화센터(구월동), 서창생활문화센터(서창동) ※ 사업규모, 예산 상황 등 고려 필수 ※ 개인에게 임차(대여, 대관) 불가(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만 가능, 지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)
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아리 교육을 위한 강사비 · 강사비는 동아리 구성원이 아닌 3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외부의 전문 강사만을 인정하며, 강사 이력사항(이력서)과 관련 경력 및 활동증명서 등 제출 필수 · 강사비는 5만원 이상 ~ 10만원 이하 책정 가능하며, 지원금 30% 범위 내 강사비 집행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동아리 대표자, 구성원에게는 인건비(사레비) 지급 불가 ※ 예술인고용보험 해당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※ 원천징수증빙자료 제출 필수(소득세, 지방세 신고·납부)
진행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 목적을 위한 재료비(소모성 물품, 재료 구입) · 자산성 물품(전자기기, 약기, 의상, 액자, 가구, 보면대, 이젤, 도서 등) 구입 불가하나 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따라 대여(임차)는 가능 - 활동 목적을 위한 모임/연습시 회의진행비(식비, 다과비) · 지원금액 상관없이 최대 5만원까지 회의비 집행 가능 · 다과비 1인당 3,500원, 식사비 1인당 8,000원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과도한 집행 금지 ※ 활동 목적과 직접 연관이 없는 간접 비용은 사용 불가 ※ 회의비의 경우, 1인당 금액 제한 확인 필수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비용 · '이체수수료'의 경우 지원신청시 기재한 경우에만 예산집행 가능하므로 필요시 포함하여 작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원사업과 연관 없는 기타 비용은 사용이 불가
예산집행 불가 항목		
일상적인 운영	- 상근직원(고용형태 등) 인건비, 사무용품 구입,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 등 단체 운영비	
자산성	- 자산 취득, 시설비, 수선비, 전화 설비 등	
행사 답사	-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비 등	
재교부	- 상금, 심사비 등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사업의 활동 목적과 직접 연관이 없는 간접 비용 -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-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제한 업종(유흥업종, 위생업종, 레저업종, 사행업종 등) 	

※ 선정심의를 통해 신청시 제출한 예산에서 일부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60만원 5개 팀, 80만원 5개 팀, 100만원 3개 팀 지원 / 총 13개 팀 지원

※ 강사비 책정 가능 금액 : 지원금 60만원(→18만원), 80만원(→24만원), 100만원(→30만원)